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January 26, 2026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OECD 글로벌최저한세 개편 방안(Side-by-Side Package) 발표

지난 2026 년 1 월 6 일 OECD 는 글로벌최저한세 개편 방안인 Side-by-Side Package 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 년 7 월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며, 다음 규정을 포함합니다.

1.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Simplified ETR Safe Harbour)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 및 결손, 조정대상조세 조정 사항 중 일부 항목만 반영하여 계산한 간이실효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 (IIR에 모두 적용)
- 기존 발표 예정이던 영구적 적용면제(Permanent Safe Harbour) 규정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2027년 (12월말 사업연도 그룹 가정, 이하 동일) 부터 적용 가능하나 일정 요건 충족 시 2026년 부터 적용 가능

2. 전환기 적용면제(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기간 연장

기존 2026 년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전환기 적용면제규정 기한을 1 년 연장하여 2027 년까지 적용

3. 실질기반 세제혜택에 대한 우대적용(Substance-based Tax Incentives Safe Harbour)

2026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인건비 지출, 실물투자에 대응하여 제공되는 세제 혜택(R&D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해 실효세율 계산 시 혜택을 주어 추가세액 영향 최소화

4. 글로벌최저한세 병행체계 (Side-by-Side System) 마련

- **Side-by-Side Safe Harbour:**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내 소득과 해외 구성기업 소득에 대해 15% 이상 과세하는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국가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 IIR, UTPR 적용 면제
 - 미국의 경우 2026년부터 적용 예정이며, 이외 국가는 입법 보완 및 평가를 거쳐 추가 적용 가능
- **UPE Safe Harbour:**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서 국내 소득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조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최종모기업 소재국에서 발생하는 추가세액에 대해 UTPR 적용 면제

각 Safe Harbour 규정이 적용 가능한 국가 목록은 OECD 에서 취합하여 공시할 예정이며, 두 가지 Safe Harbour 규정 모두 QDMTT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QDMTT 우선권이 보장되도록 국가간 조세 안분 등 제도 보완할 예정

EU: 이전가격 조정이 부가가치세(VAT)에 미치는 영향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2026년 1월 15일, 이전가격 조정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VAT) 처리와 관련하여 자문관(Advocate General, AG)의 의견을 공표하였습니다. (Stellantis Portugal, S.A.(사건번호 C-603/24))

1. 사실관계

포르투갈 납세자는 2006년 자동차 제조사의 판매회사로서 동일 그룹에 속한 유럽 소재 완성차 제조사(OEM)로부터 차량을 구매하여 포르투갈 내 독립 딜러에게 재판매 하였으며, 해당 딜러는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딜러가 차량의 제조 결함으로 인한 수리를 수행한 경우, 딜러는 해당 수리 비용에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납세자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이러한 사후 서비스 비용, 즉 보증 수리 및 긴급 출동 서비스를 포함한 비용과 기타 운영비용을 OEM에 통지하였고, OEM은 그룹 내 이전가격 계약에 따라 신용전표 또는 차변 전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법인의 실제 영업이익이 사전에 합의된 목표이익 수준에 부합하도록 이전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 과세당국은 2006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포르투갈 내에서 OEM에게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적용되던 용역 공급지 규정을 근거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VAT를 부과하였습니다.

2. 계약 상 차량 판매가 조정이 EU VAT Directive상 '대가를 목적으로 한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검토

- **이전가격 조정 및 VAT상 용역 공급에 대한 AG 의견:** AG는 본 사안의 가격 조정이 독립된 별도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합의된 이전가격과 그룹 내 이익 배분을 정산하기 위한 거래대가의 조정에 불과하므로 VAT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득세 목적의 이전가격 조정이 VA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원칙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해당 조정이 과세표준의 변경인지, 별도의 과세대상 용역인지, 또는 VAT와 무관한 단순한 이익 조정인지를 구별하는 방향으로 쟁점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Case 1) 별도 용역 공급으로서 이익 조정과 허위 용역 계상:** EU VAT Directive 제2조 제1항(c)에 따르면, 용역거래는 용역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 쌍무적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신청인은 차량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면서 보증비용을 부담하였을 뿐, 판매자를 위하여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이나 실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이 보증 관리나 보증 비용 부담을 용역 제공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형식적인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재 비용의 조정이나 이익 보정을 목적으로 한 허구적 용역에 불과하여 VAT상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Case 2) 과세당국이 소득세 목적으로 사후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과세당국에 의한 이전가격의 사후 조정은 소득세 측면에서는 국가 간 이익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VAT는 당사자 간에 실제로 합의된 거래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과세당국이 판단한 적정 이전가격은 원칙적으로 VAT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거래대가의 금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여전히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Case 3) 계약에 따라 사후 확정되는 가변가격(variable price)를 조정하는 경우:** 본 사건에서 차량의 초기 거래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유통비용, 보증비용 등 사전에 합의된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회계기간 종료 후 구매자의 목표 이익률에 맞추어 차량 가격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AG는 이러한 경우가 EU VAT Directive에서 명시적으로 규율 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격이 사후 감소하는 경우에는 제90조에 따라 과세표준이 감소하고, 가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추가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가격 조정은 모두 원래 재화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조정에 해당할 뿐, 별도의 용역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AG는 이전가격 조정이 VA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단순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CJEU에 권고하면서, 기존 판례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실제로 독립된 용역이 제공되고 이에 대한 대가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VAT Directive 제 2조 제 1항 (c)에 따라 과세대상 거래가 될 수 있으나, 과세당국이 소득세 목적상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사후적인 이익 조정은 원칙적으로 VAT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재화 공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가변가격으로 정해진 판매대가가 사후 조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VAT Directive 제 90조 또는 제 73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조정에 해당할 뿐, 그러한 대가 조정 자체가 '대가를 목적으로 한 용역의 공급'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AG는 이러한 기준이 채택될 경우, 이전가격 조정과 VAT 과세 간의 관계를 둘러싼 오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서면-2025-국제세원-4147, 2025.12.29

제목: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00.0월부터 0000.0월까지 중국 상해에서 거주하였으며, 해당시기 중에 법인을 설립하였음
- 중국의 인정납입제도를 적용받아 즉시 자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였음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투자자금 송금 없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명세서 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지

3) 회신

-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금 송금 없는

중국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사전법규국조-387, 2025.06.11.)를 참고하기 바람

- 사전-2025-법규국조-0387(2025.06.11.)

질의법인은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로, 중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임

4) 관련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

03 관세 – 美 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위헌성 판결 계류

美 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판결 전망 및 국내기업의 관세환급 전략

1. 개요

미국 대법원은 IEEPA 기반의 관세 위헌성 판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판결의 대상이 되는 IEEPA 기반 관세는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그리고 펜타닐관세 (캐나다 35%, 멕시코 25%, 중국 10%)로, 이하에서는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 주요 쟁점

미국 대법원 판결에는 다음 3가지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

미국 헌법은 세금과 관세를 결정하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는데,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권한'이 의회의 '입법 및 조세권한'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2) IEEPA의 권한부여 범위

IEEPA 상의 권한은 자산 동결이나 특정 국가와의 거래 차단에 국한되며, IEEPA 법령상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과세권을 부여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3) 국가 비상사태 남용

상시적인 무역 갈등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IEEPA의 입법 취지인 '긴급 상황'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향후 전망

1) 대법원 원고 승소 시

-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헌법적 권한 한계 및 행정부의 권한 남용에 해당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선언하는 경우, 그 법리는 특정 당사자(원고)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 규범 효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수입자가 어떤 방식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 청산(Liquidation) 완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수입 건에 대해서는 Protest 절차, ▲ 청산 미완료 건에 대해서는 PSC 절차를 통해 수입자별로 개별 환급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추가적으로, 美 의회는 수입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환급 장애요인 (예: 청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Protest 절차를 통한 환급청구가 불가능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을 해소하고자 ▲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 본 소송에는 주정부도 원고로 참여하고 있어, 법원이 전국적 환급명령(nationwide injunction)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대법원 원고 패소 시

-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범위 내에 있으며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에 대해 행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법리를 확립하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현재 부과 중인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환급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주요예상 질의 답변

1)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며 모든 추가관세를 다루나요?

- 본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법적으로 최종적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IEEPA 기반 관세 부과 권한의 행정부 한계는 명확히 설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편, 다가올 판결은 모든 추가 관세 부과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특정 법적 근거(IEEPA)에 기반한 관세부과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32조 및 301조에 따른 추가관세 부과는 법원 판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회사도 소송의 효력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 원칙적으로 미국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의 판결 효력은 당사자 효력이 기본이며, 모든 수입 자에게 자동 확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본 소송에는 주정부도 원고로 참여하고 있어, 전국적 환급 명령(nationwide injunction)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개별 기업들은 이행가능한 환급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3) 현재 통관 진행 중인 물량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판결 선고 직후라 하더라도, CBP가 공식적으로 집행을 중단하거나 절차를 변경하는 가이드언스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기존 통관 관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관세를 우선 납부한 후, 사후환급 또는 정산을 받는 구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CBP의 행정 지침이 실질적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구분	Protest	PSC (Post Summary Correction)
대상 수입신고	청산 완료 (Liquidated Entry)	청산 전 (Unliquidated Entry)
신청 기한	청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산 전까지 (자동청산 전 포함)
제출 방식	ACE Portal	
첨부 서류	상업송장, 판결문, 법률 의견서 등	원칙상 첨부 없음 (단, CBP Form 28 대응 목적 서류구비 必)
환급금 수령계좌	IOR 계좌 또는 Form 481로 지정된 대리인 계좌 (수입신고시 연계되어야 함)	
유의사항	청산된 지 180일 경과 시 불가	청산된 건 불가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황수주 상무

T. 02-2112-6782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김민철 상무(관세)

T. 02-2112-6677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